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규칙 제851호

붙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 ----- 제11조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p> <p>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제12조 ----- ----- ----- -----</p> <p>② --제12조 ----- ----- -----</p>
<p>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23조의2 제3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지출의 절차)---제13조제2호 ----- -----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p> <p>② (생략)</p>	<p>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 제105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